

의안번호	제719호
의결 연월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
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	박병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9월 29일

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(박병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1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9월 29일
발 의 자 : 박병진, 임순목, 이광진,
강현삼, 김봉희, 장선배,
박한범

1. 제안이유

지방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, 도로관리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게 사체처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로 적용범위를 정함(안 제3조)
- 다. 충돌방지를 위한 안전대책, 사체처리 등 관리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함(안 제4조)
- 라. 동물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마. 야생동물 사체발견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
다. 협의 : 균형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

라. 입법예고 : '17. 9. 21. ~ '17. 9. 26.(의회 홈페이지)

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과 충돌을 방지하고,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야생동물”이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·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(自生)하는 동물과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5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(동물)을 말한다.
2. “가축”이란 「축산법」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관리기관”이란 충청북도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를 말한다.
4. “최초신고자”란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최초로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에 적용한다.

제4조(관리기관의 임무)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, 별표에 따른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

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,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비용청구) 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 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6조(포상금) 관리기관은 제4제2항에 따른 최초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“포상금 지급대장”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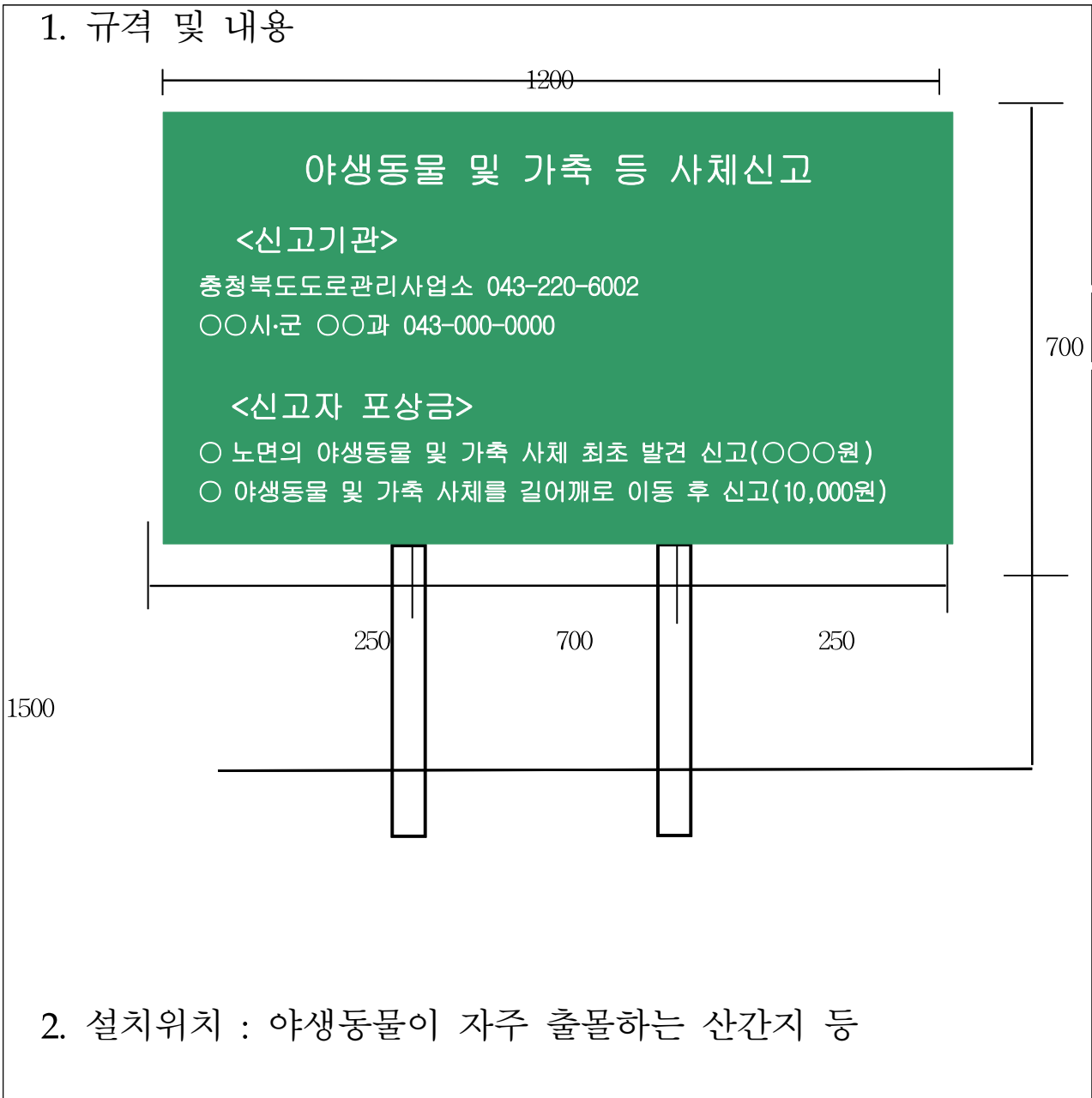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사체신고 안내판(제4조 관련)

1. 규격 및 내용



2. 설치위치 :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산간지 등

관계 법령

[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2.1, 2014.3.24>

1. "야생생물"이란 산·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(自生)하는 동물, 식물, 균류·지의류(地衣類),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(種)을 말한다.

2. "멸종위기 야생생물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.

가.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: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

나.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: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

3. ~ 9. <생략>

[문화재보호법]

제25조(사적, 명승, 천연기념물의 지정)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,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적, 명승,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축산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8.3, 2008.2.29, 2012.2.22, 2013.3.23>

1. "가축"이란 사육하는 소·말·양(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돼지·사슴·닭·오리·거위·칠면조·메추리·타조·꿩,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(動物) 등을 말한다.

1의2. ~ 10. <생략>

[폐기물관리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5.17, 2009.6.9, 2010.1.13, 2010.7.23, 2015.1.20>

1. "폐기물"이란 쓰레기, 연소재(燃燒滓), 오니(汚泥), 폐유(廢油), 폐산(廢酸),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(死體)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.

2. "생활폐기물"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.

3. "사업장폐기물"이란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

4. "지정폐기물"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·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(醫療廢棄物) 등 인체에 위해(危害)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

5. ~ 9. <생략>

제13조(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)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. 다만,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(이하 "중간가공 폐기물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7.23, 2015.7.20>

② <생략>

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지방도에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과 충돌 후 방치된 사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
- 동물 사체를 도로 이용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로드킬 사체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함

3. 관련조문

- 제5조(비용청구) 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6조(포상금) 관리기관은 제4제2항에 따른 최초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“포상금 지급대장”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추계의 전제

-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행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최초 신고자에 포상금 1만원 지급이 명시되어 있음

○ 우리도 연간 로드킬 발생은 180여건 정도로 추정되며 이에 1,800천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

□ 추계 결과

○ $180\text{건} \times 10\text{천원/건} = 1,800\text{천원}$

□ 재원조달방안

○ 지방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이기영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‘18년)	2차년도 (‘19년)	3차년도 (‘20년)	4차년도 (‘21년)	5차년도 (‘22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1,800	1,800	1,800	1,800	1,800	9,000
로드킬 최초신고자 포상금 지급	1,800	1,800	1,800	1,800	1,800	9,000
재원 조달	1,800	1,800	1,800	1,800	1,800	9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1,800	1,800	1,800	1,800	9,000
	지방세	1,800	1,800	1,800	1,800	9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